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49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조배숙 · 김대식 · 곽규택
고동진 · 박성훈 · 박충권
박준태 · 강명구 · 박형수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32조제2항제8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의 제한)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체육시설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체육시설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32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제38조제2항제3호 중 “정지명령”을 “정지명령(제32조제2항제8호에 따

라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제40조제1항제6호 중 “정지명령”을 “정지명령(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0조의3(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의 제한)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체육시설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u> <u>2.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체육시설업을 다시 영위</u>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③ (생략)

제38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하고자 하는 경우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정지명령(제32조 제2항제8호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신 설>

③ (생 략)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
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 (생 략)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영
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정지명령(제32조
제2항제8호에 따라 영업 폐쇄
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